

※[별표 2]

**직무보수교육 운영방식 (제67조제2항 관련)**

1. 시행방법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자격 취득자는 자격유효기간 이내에 20시간 이상의 직무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단, 20시간 중 지역별 집합교육은 2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재교육에 참가할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한다.

2. 직무보수교육의 종류 및 교육이수시간 인정

직무보수교육의 종류는 지역별 집합교육과 세미나(국내순회세미나, 정책기술세미나), 리모델링 현장견학, 해외연수견학,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시간 인정은 아래와 같다. 집합교육은 지역별 강의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지역별 집합교육(필수)	: 1회 4시간 인정 (지역별 연 1~2회)
② 국내순회세미나	: 1회 4시간 인정 (연 2회)
③ 정책기술세미나	: 1회 6시간 인정 (연 1회)
④ 리모델링 현장견학	: 1회 6시간 인정 (연 1회)
⑤ 해외연수견학	: 1회 16시간 인정 (연 1회)
⑥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재교육	: 1회 20시간 인정 (지역별 연 1~2회)
⑦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지 원고 기고 : 4시간/회 인정</li> <li>└ 협회 개설 교육 강사 : 실 강의시간 인정</li> <li>└ RMP자격시험 전문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제위원(10시간/회)</li> <li>선정감수위원(4시간/회), 채점위원(4시간/회)</li> </ul> </li> </ul>

3. 경비 산정

지역별 집합교육은 참가자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동 규정 제66조2항에 의거 당해 연도 직무보수 교육 시행계획 공포시 확정된 금액을 명기한다. 리모델링 현장견학과, 해외연수 견학은 당해 연도 행사계획에 의거 책정된 참가비를 징구하며, 이외 다른 교육과정 경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지역별 집합교육	: 참가자 부담 (교재비 포함)
② 국내순회세미나	: 무료
③ 정책기술세미나	: 무료
④ 리모델링 현장견학	: 참가자 부담 (교통비 및 식대 포함)
⑤ 해외연수견학	: 항공료 및 해외 현지 체재비(숙식·교통 등) 합계 금액
⑥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재교육	: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비 70% 할인 적용

4. 강사진 구성

직무보수교육 강사는 리모델링 산업계 및 학계의 저명인사 및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갖춘자로 본 협회의 자격검정 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강사로 구성한다. 위촉기준은 동 규정 제33조에 따른다.